

골프 클럽

I 사례 개요

사 례 번 호: NY N350302 (2025.07.03.)

쟁 점 사 항: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최종 수출국: 도미니카공화국

최종 원산지: 중국



II 사실관계

용도	•골프 클럽		
재료		중국	• 티타늄
		베트남	• 스테인리스강 빌렛
	 	대만 또는 말레이시아	• 고무 그립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중국  클럽 헤드 및 샤프트 생산 → Manufacturing ▾  도미니카공화국 STEP 1 외국산 재료 수입 STEP 2 샤프트 절단 STEP 3 각 부품 결합 STEP 4 마감 및 포장 → Export ▾  도미니카공화국 최종 수출		
	상세 공정		중국
 		대만 또는 말레이시아	• 열가소성 고무를 사용하여 고무 그립 생산
		도미니카 공화국	• 샤프트를 규격에 맞게 절단 • 헤드와 샤프트를 에폭시로 접착 • 그립 장착 • 각종 조정 및 외관 마감 공정 수행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골프 클럽의 원산지는 최종 조립 및 마감이 이루어지는 국가인 도미니카공화국임

《CBP의 판정》

- ⊙ 골프 클럽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헤드와 샤프트이며, 이미 완성된 구성품을 골프 클럽으로 조립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 헤드와 샤프트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므로, 골프 클럽의 원산지는 중국임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IV 시사점

- ⊙ CBP는 골프 클럽에 대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클럽 헤드와 샤프트를 핵심 구성요소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해당 부품이 생산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함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골프 클럽 드라이버
사례번호	HQ H313495 (2020.12.02.)
쟁점사항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대만] - 대만산 티타늄을 사용하여 클럽 헤드 생산 • [방글라데시 혹은 베트남] - 일본산 탄소섬유 및 중국산 수지를 사용하여 샤프트 생산 • [중국 혹은 멕시코] - 미국산 고무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그립 생산 • [멕시코] - 최종 조립 수행
판정 결과	•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최종 조립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이 아니며, 골프 클럽의 원산지는 핵심 요소인 헤드와 샤프트가 생산된 국가를 중심으로 판정함 •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과 방글라데시 혹은 대만과 베트남임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과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